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3.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공유재산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며,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심의회 생략기준 완화(안 제5조제2항)

○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 재산 →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 재산

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시점의 구체화(안 제12조제1항)

○ 예산편성 전 → 지방의회의 예산의결 전

다. 행정재산 수의계약 사용허가 대상 신설(안 제20조제2항)

○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따른 국제기구

라. 행정재산의 위탁관리 갱신 기준 신설(안 제22조의2)

○ 위탁관리를 2번 이상 갱신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관리 능력 평가를 거쳐 결정함.

마.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안 제28조제3항제1호)

- 공용·공공용으로 사용을 위한 경우

-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또는 행정목적으로의
사용인 경우

바.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대상 및 분납이자 조정(안 제35조제2항, 제63조제1항)

- 분할납부 기준 50만원 → 100만원으로 상향

- 분납이자율 6% → 3% 인하

사. 매각대금 분납이자 조정(안 제38조제1항~제3항 및 제5항)

- 분납이자율 4~6% → 3% 인하

아. 교환차금의 분할납부 기간 및 이자기준 신설(안 제38조의2)

- 영 제45조제1항에 해당 : 이자 3%(기간 10년)

- 영 제45조제2항에 해당 : 이자 3%(기간 20년)

자. 과오납금의 반환가산금 이자기준 신설(안 제63조의2)

- 가산이자 3%

차. 수의계약 매각기준 완화(안 제40조제1항제4호)

- 행정안전부 2013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반영

- '89.1.24 이전부터 사유건물로 점유·공유재산 바닥면적의 2배 매각

- '03.12.31 이전으로 변경(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공문

(공유지 대부료율 제도개선 권고 2013.7.3)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12조에 따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회계 간에 무상으로 재산을 이관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제2항제1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7조제1항 및 「구미시 건축 조례」 제33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2천만원이하의 재산”을 “5천만원 이하 재산의”로 하고, 같은 항 제4

호가목 중 “토지”를 “토지(해당 토지 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 “2천만원이하”를 “5천만원 이하”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토지”를 “토지(해당 토지 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 “2천만원이하”를 “5천만원 이하”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시장은 다음 연도 예산을 시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시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국제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국제기구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
- 제22조제1항 중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영 제21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탁자”를 “수탁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로,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

탁자”를 “관리수탁자”로, “수탁자”를 각각 “관리수탁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수탁자”를 각각 “관리수탁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 27조제2항”을 “법 제27조제4항”으로, “수탁자”를 “관리수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일반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로, “법 제27조제2항”을 “법 제27조제4항”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로, “지방자치단체”를 “시”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제안)서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결산, 사업실적 등)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및 관리 능력 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여부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운영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제23조의 제목“(일반재산 대부의 준용)”을“(준용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중 “사용료의”를 “행정재산의 사용료”로, “제25조 내지 제37조”를 “제25조부터 제37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1조의3에 따른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은 제38조의2를 준용한다.

제26조 중 “동조”를 “같은 조”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으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의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외국인 투자기업 등”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를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으로”를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1호 내지 제5호”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제28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공용·공공용”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또는 행정목적”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주거용으로”를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지방자치단체”를 “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를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영 제29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29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1000분의 50이상”을 “1,000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1000분의 50이상으로”를 “1,000분의 50을 초과하여”로 한다.

제31조제4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별표 1의 산식을 적용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3)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 중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사업

제32조제1항제1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내지 마목”을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내지 마목”을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려는 사업(「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및 사회간접자본이 확충되거나 산업구조의 조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

제32조제1항제2호마목 중 “가목 내지 라목”을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

는 하나”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가목 내지 라목”을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마목 중 “가목 내지 라목”을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가목 내지 라목”을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제27조제1호부터 같은 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7항제2호부터 같은 항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제32조제2항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 공유재산을”을 “따라”로, “재산은 다음 각호의 1”을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이

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하고 분할납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5조제2항제1호 중 “50만원”을 “100만원”으로, “3월”을 “3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6월”을 “6개월”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200만원”을 “300만원”으로, “9월”을 “9개월”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 대해 조례로 정하는 대부료의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4퍼센트”를 “3퍼센트”로, “각호”를 “각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38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6퍼센트”를 “3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영 제39조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를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5퍼센트”를 “3퍼센트”로 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교환차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

② 영 제45조제2항에 따라 교환차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한다)와”를 “포함한다), 인건비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8조”를 “제7조의2 및 제8조”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을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아파트형 공장내”를 “지식산업센터 내”로 한다.

제4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률 제7698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준일인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매각 후 남은 공유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구미시 건축 조례」에서 정하는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

하는 범위에서 일괄 매각할 수 있으며 분할 매각 후 남은 공유지의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괄 매각할 수 있다.

6. 2003년 12월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종교 용도로 점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점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7.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 제곱미터 이내에서 매각하는 경우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사·종합회관을”을 “법 제94조의3제2항, 영 제9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청사·종합회관을”로, “별표”를 “별표 2”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별표”를 “제1항에 따라 별표 2”로, “별표상”을 “별표 2 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 별표상”을 “따른 별표 2 상”으로 한다.

제52조 본문 중 “의하여 시장이 이를”을 “따라 시장이”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1급”을 “1·2급”으로, “요하지”를 “필요로 하지”로 한다.

제56조제2호 중 “관리비(1급 내지 2급”을 “관리비(1급 및 2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운영비(1급 내지 2급”을 “운영비(1급 및 2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경비(1급 내지 2급”을 “경비(1급 및 2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전기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6. 전화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7. 수도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제56조제8호 중 “공동관리비(1급 내지 2급”을 “공동관리비(1급 및 2급”으로 한다.

제61조 중 “제50조 내지 제60조”를 “제50조부터 제60조까지”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하고, 분할납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3조제1항제1호 중 “50만원”을 “100만원”으로, “6월”을 “6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2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300만원”을 “400만원”으로 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

제65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재산관리관”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6조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 장”을 “재산관리관”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8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표를 별표 2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제38조, 제38조의2,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의 개정 또는 신설된 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건물 및 부지의 대부시 공용면적 산출식(제31조 관련)

1.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식

$$\text{건물의 공용면적} = \frac{\text{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빌딩의 경우 해당 층의 총 공용면적)}}{\text{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times \frac{\text{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빌딩의 경우 해당 층의 총 전용면적)}}{\text{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빌딩의 경우 해당 층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식

$$\text{부지의 공용면적} = \frac{\text{해당 부지면적}}{\text{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는 건물 면적 (전용·공용면적 합계)}} \times \frac{\text{해당 부지내 건물의 연면적}}{\text{해당 부지내 건물의 연면적}}$$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시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u>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u>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u>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u><신 설></u>	2. <u>법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u>
3. <u>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u>	3. <u>법 제12조에 따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회계 간에 무상으로 재산을 이관하는 경우</u>
4. <u>일반재산의 용도변경</u>	4. <u>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②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다음 각 목의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 동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의 재산

나. 읍·면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의 재산

-----.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2. ----- 제57조제1항 및 「구미시 건축 조례」 제33조에 따른 -----

3. ----- 5천만원 이하 재산의 -----

4. -----

가.-----
----- 토지 (해당 토지 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 5천만원 이하-----

나.-----
----- 토지(해당 토지 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결을 얻어야 한다.

② (생략)

제20조(사용·수익허가) (생략)

<신설>

--- 5천만원 이하-----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시장은 다음 연도 예산을 시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시의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국제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u>외국인토지법 시행령</u> 」 별 표 1에 따른 국제기구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 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
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 항과 제3항,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의 대상 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 ·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 함하여야 한다.	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 ----- ----- 법 제27조제2 항 및 제3항, 영 제21조에 따라 ----- ----- ----- -----.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보존재산에 대 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 ----- ----- - 수탁자(이하 “관리수탁자” 라 한다)----- ----- ----- 행정재산----- -----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 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 · 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③ ----- 관 리수탁자----- -----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한다.

<신 설>

----- 관리수탁자-----

----- 관리수탁자-----
----- 관
리수탁자-----.

④ 법 제27조제4항-----

----- 관리수탁자-----

-----.

⑤ 일반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 법 제
27조제4항 -----
----- 해당 ---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에도 -----
----- 시---
-----.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3

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제안)서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
· 결산, 사업실적 등)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및 관리 능력 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여부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운영 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기타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4호, 제23조, 제29조 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동조 제3항 규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의2호에 의한 외국인투

이행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제23조(준용규정) ① 행정재산의 사용료 -----

----- 제25조부터 제37조까지-----
---.

② 영 제11조의3에 따른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은 제38조의2를 준용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

----- 같
은 조 -----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

자 환경 개선 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업 등” 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생략)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

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 이라 한다)에 대부·매각-----
----- 각 호-----.

1. (현행과 같음)
2. -----
-----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3. -----
-----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

4. 「외국인투자 촉진법」 ----

5. (현행과 같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인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1.·2. (생략)

③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생략)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

해당

②

해당

1.·2. (현행과 같음)

③

해당

1.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또는 행정목적

2. (현행과 같음)

3.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
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
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
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
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
다.

1. ~ 3. (생략)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
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
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
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
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하
는 때

6. (생략)

제30조(채광물채취료 등) ①제28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석·

---. -----

----- 해
당 -----
-----.

④ -----
----- 해당 -----

-----.

1. ~ 3. (현행과 같음)

4. 시-----

5. -----
----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
지 -----
-----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의 규정에 따라 -----

6. (현행과 같음)

제30조(채광물채취료 등) ① ----

토석 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토석 등의 채광물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②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채광물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채광물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 ③ (생략)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분적은 대부분을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를 적용한다. 대

00분의 50-----.

1,0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규정에도 -----

----- 1,000

분의 50을 초과하여 -----

-----.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이 경우 공용으로 사
용하는 면적은 별표 1의 산식을
적용한다.

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⑤ (생 략)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 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

⑤ (현행과 같음)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 -----
----- 외국인투자기업-----

-----.

1. ----- 각 목의 어느 하나-----

-----.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다음의

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
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사
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
천만달러이상인 사업

다. ~ 마. (생략)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준 사업으로서 다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2
호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
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외
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2) 「조세특례제한법」 제1
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
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
인 사업

3)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제
조업 중 「부품·소재전문
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
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품·소재를 생산하
는 사업

<삭 제>

다. ~ 마. (현행과 같음)

바.----- 및 다목부터 마목까
지-----

지역에서 시지역안으로 이
전하는 경우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
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
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
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
천만달러이상 2천만달러미
만인 사업

사.----- 및 다목부터 마목까
지-----

2. ----- 각 목의 어느 하나---

-.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
00만달러 이상으로서 제조
업을 경영하려는 사업(「부
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
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조제1호에 따른 부품·소
재를 생산하는 사업은 제외
한다) 및 사회간접자본이
확충되거나 산업구조의 조
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
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지식경제
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

나. ~ 라. (생 략)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 라. (생 략)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업

나. ~ 라. (현행과 같음)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

3. ----- 각 목의 어느 하나-----

-.

<삭 제>

나. ~ 라. (현행과 같음)

마.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

바.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
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7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②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와 같
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
용·수익허가하는 경우에 대부
료 등을 80퍼센트 감면 할 수
있다.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
· 수익허가 및 대부) ①영 제31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

하나-----

사. 제27조제1호부터 같은 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
13조제7항제2호부터 같은
항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
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
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해당하는 공유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
거나 대부하는 경우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을 위한 특별법」 -----

----.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
· 수익허가 및 대부) ① -----
----- 따라 -----

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
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
은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적
합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기타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
함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 ④ (생략)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생
략)

②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
거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
우는 다음과 같다.

1. 50만원 초과 : 3월 이내 2회
분납

2. 1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
회 분납

3. 2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
회 분납

③ (생략)

<신설>

-----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 시장-----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현
행과 같음)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하고 분할납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만원 ----- 3개월 -----

2. 200만원 ----- 6개월 -----

3. 300만원 ----- 9개월 -----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외국
인투자기업의 경우에 대해 조례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4. (생략)

<신설>

②영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로 정하는 대부료의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

----- 3퍼센트-----

----- 각 호-----
-----.

1. ~ 4. (현행과 같음)

5.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삭제>

③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생략)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생략)

⑤영 제39조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

③-----

----- 3퍼센트-----

-----.

1. ~ 3. (현행과 같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

----- 해당 -----

④ (현행과 같음)

⑤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

----- 3퍼

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
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의 규정
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
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센트-----
-----.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교환
차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
쳐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조
례로 정하는 이자율은 연 3퍼센
트로 한다.

② 영 제45조제2항에 따라 교환
차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
쳐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조
례로 정하는 이자율은 연 3퍼센
트로 한다.

제39조(조성원가 매각) -----

----- 포함한다), 인건비
와 -----

-----.

1. -----
----- 제7조의2 및
제8조-----
----- 일반산업

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

3. · 4. (생략)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생략)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동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읍·면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

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

2. -----

----- 지식산업센터 내-----

3. · 4. (현행과 같음)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

1. ~ 3. (현행과 같음)

4. 법률 제7698호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준일인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의 2배 이내 토지(다만, 단독 주택의 경우 200㎡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만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외의 연접토지 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

5. (생략)

<신설>

<신설>

이 경우 분할 매각 후 남은 공유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구미시 건축 조례」에서 정하는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범위에서 일괄 매각할 수 있으며 분할 매각 후 남은 공유지의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괄 매각할 수 있다.

5. (현행과 같음)

6. 2003년 12월 이전부터 종교 단체가 직접 종교 용도로 점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점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7.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 제곱미터 이내에
서 매각하는 경우

제47조(청사등의 설계) ① 청사·
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
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적합
하여야 한다.

1. ~ 7. (생략)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
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
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
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제47조(청사등의 설계) ① 법 제9
4조의3제2항, 영 제9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청사
· 종합회관을 -----
별표 2-----
----- 각
호-----.

1. ~ 7.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별표 2-----

----- 별표 2 상---
-----.

③ -----

----- 따른 별표 2
상-----
-----.

제52조(사용허가) -----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
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
지 아니한다.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
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
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생 략)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
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3. 보일러 운영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4.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 장
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내지 2급 관사
에 한한다)
5. 전기요금(1급 내지 2급 관사
에 한한다)
6. 전화요금(1급 내지 2급 관사
에 한한다)
7. 수도요금(1급 내지 2급 관사

----- 따라
시장이 ----- . ----- 1·2급
----- 필요로
하지 -----.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

-.

1. (현행과 같음)
2. -----
----- 관리비(1
급 및 2급 -----
3. ----- 운영비(1급 및 2급

4. -----

----- 경비(1급 및 2급 ---

5. 전기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6. 전화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7. 수도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u>에 한한다)</u>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u>공동 관리비</u>(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제61조(준용) 채권인 <u>공용임차주</u> 택에 대하여는 <u>제50조 내지 제60조의</u> 규정을 준용한다.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u>영 제81조제1항의</u> 규정에 의하여 <u>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u> 경우는 <u>다음 각호와 같다.</u> 1. <u>50만원</u> 초과 : <u>6월 2회</u> 분납 2. <u>100만원</u>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3. <u>200만원</u>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4. <u>300만원</u>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생략) <u><신설></u>	<u>한한다)</u> 8. ----- <u>공동 관리비</u>(1급 및 2급 -----) 제61조(준용) ----- ----- <u>제50조부터 제60조까지</u>-----.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u>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u> 경우에 <u>조례로 정하는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하고, 분할납부의 기준은</u> <u>다음 각 호와 같다.</u> 1. <u>100만원</u> ----- <u>6개월</u> ----- 2. <u>200만원</u> ----- 3. <u>300만원</u> ----- 4. <u>400만원</u> ----- ② (현행과 같음) <u>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u> <u>영 제82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이자</u>
---	---

제65조(합필의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지방자치단체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제6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

제65조(합필의 신청) 재산관리관

해당 -----
-----.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재산관리관

----- 해당 -----

----- 해당 -----

-----.

제68조(시행규칙) ----- 시행
에 -----
-----.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4>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12.26]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2.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10.2.4]

제12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에는 유상(有償)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2.4>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2.4>
④ ~ ⑥ 생략

[전문개정 2008.12.26]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3(교환차금의 납부) ①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4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행정재산 중 동산의 교환차금에 대해서는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환차금의 일시 전액 납부기간은 계약 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0.8.4]

제11조의3(교환차금의 납부) ①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③ 행정재산 중 동산의 교환차금에 대해서는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환차금의 일시 전액 납부기간은 계약 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0.8.4]

[시행일 : 2013.12.22] 제11조의3제1항단서, 제11조의3제2항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대부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4>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10.8.4>
[전문개정 2009.4.24]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대부 전에 미리 내
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
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
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대부
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3.6.2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
하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④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10.8.4>
[전문개정 2009.4.24]

[시행일 : 2013.12.22] 제32조제2항, 제32조제3항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지역경제의 활성
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29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대부하는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에 대부하는 경우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11.16>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분양받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유재산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부료 감면대상지역의 공유재산

③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감액하는 경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대부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4]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9.12.15, 2010.6.28, 2010.8.4, 2012.4.10, 2013.3.23>

1. ~ 5. 생략

6. 「관광진흥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을 입주계획에 따라 정해진 지구에 입주하는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7.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지원 또는 권장하기 위하여 주택 또는 공공이용시설 부지로 사용하게 될 재산을 마을주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8. ~ 11. 생략

12. 지방자치단체가 취급하던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포괄하여 이관하면서 이관되는 업무에 제공되고 있던 재산을 이관받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3. ~ 22. 생략

23.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24. ~ 29. 생략

② 상반된 이해관계인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서 해결하기 극히 곤란한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있는 재산이나 수익계약으로 매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찰로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10.8.4>

[전문개정 2009.4.24]

제39조(대금의 납부 및 연납) ①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全額)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4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 3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
2. 전원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

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되기 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자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③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 납부기간은 계약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매각대금의 잔액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4.24]

제39조(대금의 납부 및 연납) ①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全額)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1.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
2. 전원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되기 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자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③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 납부기간은 계약체

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매각대금의 잔액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4.24]

[시행일 : 2013.12.22] 제39조제1항, 제39조제2항

제45조(교환차금의 납부) ①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4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일반재산 중 동산의 교환차금에 대해서는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환차금의 일시 전액 납부기간은 계약 체결 후 60일

을 초과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4.24]

제45조(교환차금의 납부) ①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③ 일반재산 중 동산의 교환차금에 대해서는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환차금의 일시 전액 납부기간은 계약 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4.24]

[시행일 : 2013.12.22] 제45조제1항단서, 제45조제2항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

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4>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변상금의 산출 근거를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납부기한은 변상금 납부 통지일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변상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제8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4.24]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 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3.6.21>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변상금의 산출 근거를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납부기한은 변상금 납부 통지일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변상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제8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4.24]

[시행일 : 2013.12.22] 제81조제1항단서

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법 제8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4.24]

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법 제8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이자를 말한다. <개정 2013.6.21>

[전문개정 2009.4.24]

[시행일 : 2013.12.22] 제82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국유·공유 재산의 임대 및 매각) ① ~ ⑦ 생략

⑧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2.12.11>

⑨ ~ ⑪ 생략

[전문개정 2009.1.30]

[제목개정 2012.12.11]